

교수회 규정

(제정 2006. 12. 5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전주대학교 교수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는 학문의 자유를 근간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, 교권을 수호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) 본회는 전주대학교에 재직중인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17.>

제3조(조직) ① 본회에는 전체교수회(이하 “교수회”라 한다), 대의원회, 단과대학교수회,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,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조(회의의 성립 및 의결) 전체교수회, 연석대의원회, 단과대학 교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교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결 역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.

제5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본교예산, 개인 및 임의단체 지원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.

제6조(회기) 본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사무소의 소재)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대학교에 둔다.

제2장 임원

제8조(임원의 구성) ① 전체교수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감사 2명 및 상임의원(전체교수회 상임의원, 대의원회 상임의원, 재무 상임의원 각 1명) 3명으로 한다.

② 단과대학교수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총무 1명으로 한다.

제9조(임원의 자격과 선출) ① 교무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. 임원이 교무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.

② 전체교수회의 상임의원은 전체교수회의 회장이, 단과대학교수회의 총무는 단과대학교수회의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교수회의 회장, 부회장, 감사, 단과대학교수회장의 선출 및 학장후보의 추천, 그리고 선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 전체교수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체교수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
④ 상임의원은 회장을 도와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.

제11조의2(교수회 회장 및 교수평의원의 보직 제한) 교수회 회장 및 교수평의원은 그 임기만료일(소환의결일을 포함한다)로부터 각각 2년, 1년 이내에는 대학본부 처장급 이상의 교무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7.>

제3장 전체교수회

제12조(전체교수회의 구성) 전체교수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3조(회의의 종류와 소집) ① 전체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학기 1회 년 2회 개최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수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, 4호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대의원회 또는 교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
4. 교수회 회장의 소환발의가 있을 때
5. 교수평의원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

④ 회장은 총회의 안전과 일정을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전체교수회의 기능) ① 전체교수회는 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대의원회에 위임할 사항
4. 대학평의원회의 교수평의원의 추천 동의에 관한 사항
5. 교수회 회장의 소환 및 교수평의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전체교수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단, 5호 내지 8호에 관한 사항은 협의·제안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2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3. 교수회 규정의 제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사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5. 교수복지 및 처우에 관한 사항
6. 주요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총장선임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
8. 학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

- 제15조(대학평의원의 위촉 의뢰)** ① 교수회 회장단은 대의원회에 교수평의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 교수회 회장단은 후보추천 시 전체교수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② 교수회 회장단은 교수평의원 후보 추천 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교수평의원 5명의 후보를 선정 후, 총회의 동의(인준)를 받아야 한다.
- ③ 교수평의원 후보명부에는 교수회 임원 2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5.11.24.>
- ④ 교수회 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거친 교수평의원 명단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송부하고 대학평의원으로 위촉 의뢰하여야 한다.

- 제15조의2(교수회장의 소환 및 교수회장단의 유고)** ① 교수회 회장단이 교수회의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, 교수회원 재적 5분의 1 이상의 연명에 의한 소환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교수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.
- ② 전 항의 교수회 회장 소환에 관한 총회에서 교수회 회장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.
- ③ 교수회 회장단의 유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유고 발생 10일 이내에 단과대학 교수회장이 포함된 연석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, 연석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 2014.6.17.>
- ④ 새로운 교수회 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연석 대의원회가 회장단의 기능과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14.6.17.>
- ⑤ 연석 대의원회는 보궐선거 관련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,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. <개정 2014.6.17.>
- 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연석 대의원회의 결정사항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교수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6.17.>

- 제15조의3(대학평의원의 해촉 의뢰 등)** ① 교수회 회장의 요구 또는 교수회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,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의결로 교수평의원을 해촉 의뢰할 수 있다.
- ② 전 항은 교수평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.
- ③ 교수평의원이 해촉된 경우, 또는 보궐선거를 통하여 교수회장단이 구성된 경우, 교수회장은 새로운 교수평의원 후보추천 및 위촉 의뢰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4장 대의원회

- 제16조(대의원회의 구성)** ① 대의원회는 각 단과대학 및 교양학부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교수회의 회장, 부회장,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6.17.>
- ② 필요시 대의원회에 단과대학 교수회장을 포함시킨 연석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17.>

- 제17조(대의원의 자격 등)** ① 교무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. <개정 2014.6.17.>
- ② 대의원은 단과대학의 소속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하고, 소속교수가 1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하며, 소속교수가 40명 이상인 경

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한다.

③ 대의원이 유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이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대의원의 선출과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18조(대의원의 자격상실) ① 대의원이 교무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② 대의원이 재임 중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제19조(대의원의 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20조(대의원회의 기능과 권한) ① 대의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전체교수회가 위임한 사항
3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대의원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제안할 수 있다.

1. 교원인사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교원의 연구환경 및 교수복지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전체교수회가 위임한 사항
4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1조(대의원회의 종류와 소집)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학기마다 2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제5장 단과대학 교수회

제22조(단과대학교수회의 구성) 단과대학교수회는 당해대학 소속 정년제열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6.17.>

제23조(단과대학교수회의 기능과 권한)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단, 3호는 협의·제안할 수 있다.

1. 단과대학교수회장 및 대의원의 선출
2. 학장 또는 단과대학교수회장이 부의한 사항
3. 학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

제24조(단과대학교수회 소집) 각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및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25조(규정의 제·개정)** ① 본 규정의 개정은 회원 30명 이상이나 대의원회 또는 회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총회의 의결로 제·개정안을 확정한다.
- ② 회장은 개정안을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총장은 확정·공포 전 교무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수회 임원과 대학평의원의 임기 등)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교수회 임원과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은 2009년 2월 28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